⊙ 독일 - 세법개정안 2020 승인

■ 독일 의회는 2020년 12월 18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2020 세법개정안을 승인함[1)]

○ 전자 인터페이스 운영자를 위한 전자상거래 VAT 세부 규칙의 개정

○ 중소기업의 사업자산에 대한 투자공제의 확대

○ 고용주에게 부여된 코로나 특별 혜택에 대한 연장

■ EU의 VAT 전자상거래 패키지 지침의 완전적용을 포함한 VAT 개정안

○ 해당 전자상거래 지침은 상품의 원거리 판매 및 특정 국내상품 공급과 관련된 조항이며 이는 공급자와 비과세 소비자 간 상품판매에 대한 VAT 보고 및 지불 의무가 포함됨[2)]

○ 이러한 사항은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OECD 보고서[3)]의 정책들의 방향과 일치함

■ 중소기업의 사업자산에 대한 투자 공제를 확대함

○ 세법개정안의 투자공제 개정에 의하면 사업자산 비용의 50%를 공제할 수 있고 사업 목적을 위한 사용 요건이 완화되어 50%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투자공제 가능

- 종전의 투자비용 공제의 경우 사업자산 비용의 40%를, 사업자산의 사용용도가 사업 목적을 위한 사용이 90%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취득 또는 제조 이전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었음

1) IBFD, German Parliament Approves Annual Tax Act 2020, https://research.ibfd.org/#/doc?url=/linkre solver/static/tns_2020-12-17_de_1, 검색일자: 2021. 1. 25.
2) IBFD, Detailed VAT e-commerce rules for electronic interface operators - published, https://research.ibfd.org/#/doc?url=/data/tns/docs/html/tns_2019-12-02_e2_1.html, 검색일자: 2021. 1. 25.
3) OECD (2019), OECD report on role of digital platforms for collecting VAT, http://www.oecd.org/tax/consumption /the-role-of-digital-platforms-in-the-collection-of-vat-gst-on-online-sales.pdf, 검색일자: 2021. 1. 25.

■ **고용주가 부여받았던 특별 코로나 혜택에 대한 면세가 연장됨**[4)]

○ 고용주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,500유로[5)]까지 부여한 특별 코로나 혜택에 대한 면세가 2021년 6월 30일로 연장됨

○ 코로나 조세 감면법에 의해 도입된 단기 근로 및 계절별 단기 근로에 대한 고용주의 보조금에 대한 일시적인 면세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됨

<자료 수집 및 정리: 권순오 세무사>

4) PWC, German Bundesrat approved Finance Bill 2020, https://blogs.pwc.de/german-tax-and-legal-news/2020/12/28/german-bundesrat-approves-finance-bill-2020/, 검색일자: 2021. 1. 20.
5) 2021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201만원임.